

# 제51조 비과세소득



## 제51조의 요약

-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(법인세 부과 안함)
  -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
- 조특법상 비과세소득
  -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양도차익(조특법 제13조)
  -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양도차익(조특법 제13조)
  - 위 회사가 창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(조특법 제13조)

## ● 제51조 [비과세소득]

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 (2010. 12. 30 개정)

## I. 본 조의 개요

### ① 비과세소득

비과세소득은 조세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으로서 다른 일반적 익금항목과 같이 정책결정에 따라 그 범위 및 유형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으나, 지금은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만이 비과세소득으로 남아 있다.

이밖에 1981·82년 및 1990년 삭제되었으나 법률개정시의 경과규정에 의거 기발행된 국·공채의 수입이자,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등 비과세되는 소득

이 있는데 발행된지 이미 10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.

## II. 비과세소득의 범위

### 1.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소득

공익신탁의 신탁재산이익은 비과세된다. 신탁은 사익이나 공익이냐의 목적에 따라 사익신탁과 공익신탁으로 나누어진다. 이 중 공익신탁이란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제사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고 신탁법 제 65조가 규정하고 있다.

이러한 공익신탁에 제공한 신탁재산의 관리·처분·멸실·훼손 등의 사유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비과세한다는 것이다.

### 2. 경과규정상의 비과세소득

#### ① 경과규정상의 국·공채비과세소득

1981년과 1982년 이전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국·공채이지만 아직 상환기간이 남아 이자소득이 수취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의거, 계속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관련조문	발행주체	채권 등의 종류 및 구분	비과세내용과 적용방법
부 칙 (98.12.28) 제12조	국 가	산업부흥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정발보상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전신·전화채권의 이자와 할인액	1982. 12. 31 이전 발행분으로서 만기도래이자 비과세
	지방자치 단 체	지하철공채의 이자와 할인액 도로공채의 이자와 할인액 상수도공채의 이자와 할인액	1982. 12. 31 이전 발행분으로서 만기도래이자 비과세
	주택은행	국민주택채권이자	1981. 12. 31 이전 발행분으로서 만기도래이자 비과세
	한국토지 공 사	토지개발채권의 이자	1982. 12. 31 이전 발행분으로서 만기도래이자 비과세

	국민저축 조합저축의 이자	1990. 12. 31 이전 발행분으로서 만기도래이자 비과세
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② 매매된 국·공채 비과세소득의 범위

법인이 국·공채 등을 중도에 매매하거나 환매 등을 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표면이자율과 시장실세이자율의 차이로 인해 매매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바, 이 경우 처분대가는 당해 채권의 액만가, 보유기간, 법정이자 및 이자율 차이로 인한 처분손익이 가감되어 결정된다. 이자소득은 차액전액이 아니고 법정 이자부분만의 금액이다. 예를 들어 국·공채의 장부상 액면가액 100,000원, 보유기간 1년, 표면금리 6%(만기 5년)의 국채를 110,000원, 105,000원, 99,000원에 매각한 경우의 제반 계산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경 우	① 110,000원 매각	② 105,000원 매각	③ 99,000원 매각
거 래 가 액	매 각 총 대 가	110,000	105,000	99,000
	취 득 액 면 가	100,000	100,000	100,000
	표 면 이 자 인 식	6,000	6,000	6,000
이 자 와 처 분 손 익	이 자 소 득 금 액	6,000	6,000	6,000
	처 분 (손) 익 금 액	4,000	(1,000)	(7,000)
유권해석상의 공제가능 비과 세 소득금액		6,000	5,000	

논리적으로 보아 앞의 세가지 경우 모두 6,000원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계산에서 비과세항목으로 차감하고 나머지 처분손익은 일반익금 및 손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.

【회계처리】

① (차) 현 금	110,000	(대) 유가증권	100,000
		유가증권 처분이익	4,000
		수입이자	6,000
		(비과세이자소득)	
② (차) 현 금	105,000	(대) 유가증권	100,000

	유가증권처분손실	1,000	수입이자	6,000
③ (차)	현 금	99,000	(대) 유가증권	100,000
	유가증권처분손실	7,000	수입이자	6,000

(비과세이자소득)

### 3.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소득 종류 열거

- ◎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(조특법 제13조제1항제1호)
  - ◎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(조특법 제13조제1항제2호)
  - ◎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,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(조특법 제13조제2항)
-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해설한다.

## III. 비과세소득 명세서

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시 비과세소득명세서를 작성 첨부한다.